

개인연금에 대한 소득공제의 수익률효과 분석

An Analysis of the Rate of Return Effect of the Income Tax Deduction on the Personal Pensions

정 요 섭*

Chung Yo-Sup

개인들의 자발적인 노후소득보장을 유도하기 위해 소득공제혜택을 부여하면서 도입된 개인 연금에 대해 최근 낮은 투자수익률이 커다란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하지만 개인연금에는 소득 공제혜택이 있기 때문에 이 혜택으로 인한 수익률 효과가 다른 금융상품에 비해 낮은 투자수익률을 충분히 만회하게 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면 낮은 투자수익률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매년의 불입금에서 소득공제로 인한 절세액을 차감한 금액들의 10년·20년 누적합과 매년의 불입금의 10년·20년 단순합이 같도록 하여 연평균 수익률을 구하였다. 그 결과를 보면 우선 신·구개인연금 모두 소득공제의 수익률효과는 한계세율이 올라갈수록 커지지만 불입기간이 10년일 때보다 20년일 때 거의 반으로 줄어들었고, 전반적으로 소득공제로 인한 절대치에 비하면 수익률효과 수치는 생각보다 작았다. 특히 구개인연금의 경우 고소득계층을 제외하고는 그 값이 작아 소득공제효과가 미미하다. 신개인연금의 경우 고소득계층일수록 소득공제의 수익률효과가 클 가능성이 높고 중하위소득계층으로 내려갈수록 수익률효과가 미흡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러한 결과는 현재의 세제지원방식은 저소득층에 대한 노후대비 유인이 되기 어려우므로 최소한 동등한 세제혜택이 주어지는 방식으로의 전환 필요성을 암시한다.

※ 국문 색인어: 개인연금, 노후소득, 소득공제, 연금저축, 한계세율

* 한양대학교 경영학부 교수(yschung@hanyang.ac.kr)

I. 서론

정부는 1994년 개인들의 자발적인 노후소득보장을 유도하기 위해 개인연금저축 제도를 도입하였다. 이 제도는 불입금에 대해 40%의 소득공제혜택을 부여하고 연금급부에 대해서는 전액비과세혜택을 부여하였다. 이러한 세제지원방식은 획기적인 저축유인제도로 인식되어 큰 호응을 얻었다. 그러나 이 연금제도에 내재된 중도 해지에 따른 불이익 결여 등의 문제점을 감안하여(고광수, 2000. 4) 그리고 국제적 정합성과 연금소득 과세체계의 일관성 확립을 위해(전영준, 2000. 1) 기존의 '개인연금저축' (이하 '구개인연금') 제도를 폐지하고 2001년 1월부터 새로운 '연금저축' (이하 '신개인연금') 제도를 도입하였다. 신개인연금제도는 구개인연금제도에서의 불입금 소득공제비율을 불입금의 40%에서 100%로 상향조정하고 연금수급시 연금급부를 연금소득에 포함하여 과세하는 방식을 택함으로써 구개인연금제도를 보완하였다.

1994년 개인연금 도입 당시의 높은 금리상황과는 달리 우리나라 경제상황의 변화와 함께 금리가 하향추세를 유지하여 채권 등 금융자산에 대한 금리도 과거에 비해 상당히 떨어진 상태이다. 이러한 저금리 상황은 개인연금 자산에 대한 낮은 수익률을 가져오게 되었다. 지난해 11개 은행의 개인연금신탁 수익률은 평균 연 3.1%로, 지난 1996년(연 14.9%)의 1/5 수준으로 딱 떨어졌다. 수익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상품도 나왔다. 2001년에 판매된 농협은행의 채권형 연금신탁은 지난해 수익률이 마이너스 0.56%에 그쳤고, 국민·기업·조흥·SC제일은행 등도 0%대 수익률을 보였다(『조선일보』, 2006).

이러한 낮은 수익률과 연금가입자 개인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인해 1994년 도입 당시 직장인의 20%가 가입할 정도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개인연금에 대한 금융기관 전체 유지율은 2001년 말 현재 33.2%에 불과하다(전승훈 외 2인, 2006, pp.140~141). 현재의 저수익률 상황이 지속되면 신규가입자가 늘지 않을 뿐 아니라 기존 가입자들도 계약의 유지 및 지속적인 불입금 납입에 대해 회의를 하게 될 것이고 개인연금 도입취지가 무의미해질 수도 있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개인연금에는 소득공제혜택이 있고 이 혜택으로 인한 절세

금액은 소득계층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상당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하지만 연금 불입기간이 상당히 장기이기 때문에 절세금액의 절대적 수치만 볼 것이 아니라 연금불입 전체기간 동안의 수익률효과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비록 개인연금 상품에 대한 투자수익률은 낮다고 할지라도 개인연금에 주어지는 소득공제혜택이 다른 금융상품에 비해 낮은 수익률을 충분히 만회하게 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면 낮은 투자 수익률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다.

개인연금에 관련된 다양한 연구들¹⁾이 있는데, 이 중 개인연금에 대한 소득공제혜택을 분석한 것은 정요섭(1999, 2001)의 연구이다. 그런데 이 연구들은 소득공제혜택을 단지 금액측면에서만 분석하였고 소득공제혜택의 수익률효과 측면은 고려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개인연금에 주어지는 소득공제로 인한 절세효과가 장기간 잠기는 측면을 고려한 소득공제혜택의 수익률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제Ⅱ장에서는 신·구개인연금에 대한 세제지원 내용을 살펴보고 제Ⅲ장에서는 신·구개인연금에 대한 소득공제혜택의 수익률효과를 분석하고 양자간에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파악한다. 제Ⅳ장에서는 지금까지의 내용을 요약하고 결론을 맺는다.

Ⅱ. 개인연금에 대한 세제지원

개인연금에 대한 세제지원은 불입금에 대한 세제지원과 연금급부에 대한 세제지원의 두 측면이 있다. 아래에서는 신·구개인연금에 대한 세제지원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1) 개인연금관련 전반적인 기존연구 검토는 전승훈 외 2인(2006, pp.141~143)을 참조.

1. 구개인연금에 대한 세제지원²⁾

불입금에 대한 세제지원은 연 72만원 한도로 연간 불입액의 40%를 소득공제해주는 것이다. 따라서 소득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간 불입액 한도는 180만(월평균 15만)원이다. 소득공제혜택과는 관계없이 불입할 수 있는 연간 한도는 1,200만원(월기준 100만원, 분기기준 300만원)이다. 이 중 180만원만 소득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고 나머지는 연금수급시 이자소득세만 면제된다. 연금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에 중도해지한 경우에는 감면받은 소득공제액을 추징당하게 된다. 추징세액은 중도해지 때까지 납입한 불입금의 4%(연 72,000원 한도)이다. 5년 이상 납입한 후 해약하면 소득세 추징은 당하지 않는다.

연금급부에 대한 세제지원은 55세 이후부터 5년 이상의 기간에 걸쳐 연금으로 받는 경우 이자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요건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에는 이자소득에 대해 이자소득세가 부과된다. 즉, 계약만기전 중도해지하거나 계약기간 만료후 일시금 형태로 받을 때에는 그동안 면제된 이자소득세가 모두 추징된다(『매일경제신문』, 2001).

부득이한 사유로 추징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1) 가입자의 사망, 해외 이주, (2) 천재지변, (3) 가입자가 퇴직한 경우, (4) 가입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의 장기휴업 또는 폐업, (5) 가입자가 영위하는 사업장이 폐업한 경우, (6) 가입자가 3개월 이상 장기간 입원치료·요양을 요하는 상해 또는 질병 발생시 등이다³⁾.

2. 신개인연금에 대한 세제지원

신개인연금은 국민연금을 포함한 모든 연금과세체계를 「불입시 전액(100%) 소

2) 『생명보험협회』, 「개인연금저축 시행을 위한 세부사항」, 통권 제183호, 1994. 4. pp.36~39.

3) 국세청 Internet site(<http://www.nts.go.kr>).

득공제, 연금급부시 과세」 체계로 전환함에 따라 구개인연금의 「불입시 일부(40%) 소득공제, 연금급부시 비과세」 체계를 변경하여 도입한 제도이다. 신개인연금에 불입할 수 있는 연간 한도는 1,200만원(월기준 100만원, 분기기준 300만원)이며 이 중 300만원을 한도로 불입액 전액에 대해 소득공제혜택이 주어진다⁴⁾.

300만원 초과불입금에 대해서는 소득공제혜택이 없고 단지 발생이자에 대해 만기에 이자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연금수령시 소득세계산대상으로 한다. 300만원 초과불입금에 대해서는 소득공제혜택이 주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연금수급시에는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연금수급시 과세대상이 되는 금액은 연금수령액(연금저축의 운용실적에 따라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 포함)에서 300만원 초과불입금을 제외한 금액이 된다. 총연금액에 포함될 과세대상 연금소득을 수식으로 표시하면 아래와 같다⁵⁾.

과세대상 연금소득 = 연금수령액

$$\times \left\{ 1 - \frac{\text{실제 소득공제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불입한 금액의 누계액}}{\text{대통령령이 정하는 총연금지급액 또는 예상액}} \right\}$$

연금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에 연금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해지가산세가 추징되는데 추징액은 중도해지 때까지 불입한 금액(연 300만원 한도)의 2%이다. 다만, 위의 구개인연금에서 언급한 6가지 제외사항의 경우에는 가산세가 추징되지 않는다. 그리고 5년 이상 납입한 후 해약하면 해지가산세는 추징되지 않는다.

연금급부에 대한 세제지원은 55세 이후부터 5년 이상의 기간에 걸쳐 연금으로 받는 경우 연금수급기간에 걸쳐 과세가 이연된다. 그러나 이 요건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에는 해지 또는 연금 외의 형태로 받는 금액(소득공제 받았던 금액 기준)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20% 원천징수 후 종합소득세에 합산하여 재계산한다. 기타소득으

4) 2005년 말 퇴직연금의 도입과 함께 2006년도부터 신개인연금 즉, '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증액되었다.

5) <http://www.nts.go.kr>의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2 제3항.

6) <http://www.nts.go.kr>의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2 제4항.

로 간주되는 금액을 수식으로 표시하면 아래와 같다⁶⁾.

$$\text{기타소득} = \text{해지 또는 연금 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금액} \times \left\{ 1 - \frac{\text{실제 소득공제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불입한 금액의 누계액}}{\text{대통령령이 정하는 총지급액 또는 예상액}} \right\}$$

이러한 세제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1) 가입자가 18세(구개인연금에서는 20세) 이상 국내거주자이어야 하고, (2) 불입금은 10년 이상의 기간에 걸쳐 납입해야 한다. 지금까지 설명한 신·구개인연금저축에 대한 세제지원내용을 요약하면 <표 1>과 같다.

<표 1> 신·구개인연금저축에 대한 세제지원

구개인연금저축	신개인연금저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0. 12. 31까지 가입한 자에게만 계약만료시까지 적용 - 불입금의 40% 소득공제(연 72만원 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 1,200만원까지 불입 가능 - 연금수령시 비과세 - 중도해지시 이자소득세 부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4% 원천징수로 종결 - 5년 이내 해지시 불입누계액(연 180만원 한도)의 4% 해지가산세 추징(연 72,000원 한도) - 취급기관 : 은행(신탁), 보험, 투신사, 우체국 보험, 농·수협조합(생명공제) - 가입연령 : 20세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1. 1. 1 이후 도입 - 불입액 전액 소득공제(연 300만원 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 1,200만원까지 불입 가능 - 연금수령시 과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세대상 연금저축소득 = 연금수령액 (연 300만원 불입한도 기준) - 중도해지시 기타소득으로 과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 원천징수 후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재계산 - 5년 이내 해지시 불입누계액(연 300만원 한도)의 2% 가산세 부과 - 취급기관에 뮤추얼펀드, 농·수협중앙회(생명공제), 신탁(생명공제) 추가 - 가입연령 : 18세 이상 * 기존 개인연금저축 가입자도 동시 가입 가능 (총 372만원까지 소득공제 가능)

자료: 국세청 Internet site(<http://www.nts.go.kr>).

Ⅲ. 개인연금에 대한 소득공제의 수익률효과 분석

1. 가정

신·구개인연금 각각에 대한 세제지원효과는 불입금 납입시와 연금수령시의 소득수준 및 적용세율, 불입금 납입액 및 납입기간, 연금수령액 및 수령기간, 적립이율 수준, 불입금 납입완료후 연금개시까지의 거치기간 등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금융감독원 연금감독팀, 2000, p.101).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가정을 전제로 하여 개인연금에 대한 소득공제의 수익률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 (1) 불입금 소득공제로 인한 절세액의 불입금 감소 이용: 불입금에 대한 소득공제로 인한 절세액을 이용하는 방안은 계약자배당금을 이용하는 방안처럼 불입금 감소에 이용하거나 다른 금융상품을 구입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 그런데 본 연구에서는 불입금 소득공제로 인한 절세액을 불입금 감소에 이용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왜냐하면 개인연금에 대한 불입금은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되어, 세금이 줄어들어 불입금이 그만큼 줄어드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 (2) 전기간 동일불입금 납입: 불입금이 불입금납입 전기간 동안 동일하다는 가정이다.
- (3) 소득세율체계 불변: 현재의 소득세율체계가 연구대상기간 동안 변하지 않고 계속 유지된다. 또한 특정인의 현재의 한계세율이 불입금납입 전기간에 동일하고 연금수급 전기간에도 동일하다. 그러나 불입금납입·연금수급 양 기간에도 동일하다는 가정은 아니다.
- (4) 즉시연금 개시: 불입금납입 완료후(즉, 불입금납입 완료 1년뒤) 누적불입금을 연금으로 즉시 지급한다. 만약 불입금납입 완료후 연금개시까지 거치기간이 길어지면 불입금이 잠겨있는 기간이 그만큼 길어지기 때문에 소득공제로 인한 효과는 감소하게 된다.

2. 수익률 계산식

위의 가정을 전제로 하여 신개인연금에 대한 소득공제의 연평균 수익률효과를 계산하기 위한 기본수식을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sum_{t=1}^n P_t(1-1.1TR_p)(1+i)^{n-t+1} = P_t(n)(1-1.1TR_a)$$

위에서

t : 계약체결후 불입금납입 경과기간

i : 연 평균 수익률

n : 불입금납입만기년(연금개시시점으로 간주)

P_t : 신개인연금에 대한 매년의 불입금(연 300만원 소득공제 한도)

1.1 : 소득세의 10%가 주민세로 부과됨을 고려한 것

TR_p : 불입금 납입시의 가입자 한계세율

TR_a : 연금수급시의 가입자 한계세율

위 공식에 대해 몇가지 언급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우선, 위 수식은 좌변과 우변을 동일하게 하여 우변에 있는 i 값을 구하기 위한 것이다. 등식의 좌변은 매년의 불입금 중 소득공제로 인한 절세액을 차감한 값들의 연금개시 시점에서의 누적값을 말하며, 우변은 매년 불입한 금액의 단순합을 연금수급시의 세후금액으로 환산한 연금개시시점에서의 총액을 말한다. 이 양변의 값을 같도록 하는 i 값이 바로 소득공제로 인한 절세액의 연평균 수익률효과를 나타낸다. 예를 들면, 어떤 가입자가 10년 동안 매년 300만원씩 불입하고 소득공제로 불입금의 20%를 환급받고 연금수급시 10%를 세금으로 납입해야 한다면 매년의 실질불입금은 240만원(즉, 불입금 300만원-소득공제액(20%) 60만원)이고 10년말 연금개시시점에서의 연금총액은 2,700만원(즉, 불입금합계 3,000만원-연금수급시

의 과세액(10%) 300만원)이 되는데 매년의 불입금 240만원이 10년 뒤 2,700만원이 되도록 하는 수익률이 바로 i 값이라는 것이다. 이 예에서 한 가지 더 추가하면 적립기간이 1년이라면 소득공제로 인한 절세액(10%)이 바로 불입금에 대한 수익률(10%)이 되지만 개인연금과 같이 장기인 경우에는 그 절세효과가 장기간 잠겨 있는 셈이 되므로 그 불입금에 대한 수익률효과는 장기일수록 점감된다. 다시 말하면 개인연금과 같이 장기상품의 경우 만기로부터 먼 불입금의 경우 소득공제의 수익률효과가 낮고 만기에 가까운 불입금의 경우 수익률효과가 높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위의 공식에 의해 연평균 수익률을 정확하게 계산할 필요가 있다.

둘째, 위 수식에서는 불입금 납입시의 가입자 한계세율이다. 소득세는 과세대상 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개인연금저축 불입금 등 각종 소득공제를 차감한 후 과세표준을 구하고 여기에 세율을 곱하여 소득세액을 계산하고 이 금액에서 각종 세액공제를 차감한 후 산출된다. 이렇게 산출된 금액에 주민세를 가산하면 납부해야 할 세액이 결정된다. 따라서 개인연금저축에 가입하여 불입금을 납입하게 되면 그만큼 한계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이 줄어들게 되므로 절세효과가 나타나게 되며 그 금액은 대략 (소득공제대상 불입금) × (한계세율) × (1 + 주민세율)이다. 따라서 위 식의 좌변에서 (1.1)(P_t)(TR_p)는 이 금액을 반영한 것이다. 2005년부터 과세표준에 적용되는 소득세율은 <표 2>와 같다.

<표 2> 소득세율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1,000만	8%	-
≤4,000만	17%	90만
≤8,000만	26%	450만
>8,000만	35%	1,170만

셋째, TR_a 는 연금수급시의 가입자 한계세율이다. 따라서 연금급부는 이 세율에 따라 감소하게 된다. 연금급부는 연금 개시시점에 그동안 적립된 금액을 연금수급

기간으로 나뉘 소득세를 공제한 후 연금수급 첫년도에 지급하고 나머지에 대해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다음 연도에 소득세 공제후 지급하고 그 다음 연도에도 계속 이런 방식(좌수분할식)으로 지급되므로 매년의 세후 연금급여의 누적현재가치는 불입금총액에서 연금급부에 대한 과세액을 차감한 금액과 동일하게 되며 바로 위 식의 우변에 있는 수식으로 표시된다.

넷째, 위 수식에서 P_t 즉, 불입금은 매년 동일한 것으로 가정하였으므로 상수라고 할 수 있으며 양변에 모두 있으므로 약분되어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sum_{t=1}^n (1+i)^{n-t+1} = \frac{n(1-1.1TR_a)}{1-1.1TR_p}$$

이 식의 의미는 소득공제로 인한 수익률효과는 매년의 불입금에 의해서는 영향을 받지 않고 불입시의 한계세율 TR_p , 연금수급시의 한계세율 TR_a , 불입기간 n 에 의해서만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TR_p 가 커지면 커질수록 우변의 값이 커지게 되므로 i 값은 커지게 된다. 이는 개인연금 불입시의 한계세율이 높을수록 수익률효과가 커지게 된다는 것이다. 반면에 TR_a 가 커지면 커질수록 우변의 값이 작아지게 되므로 i 값은 작아지게 된다. 이는 개인연금 수급시의 한계세율이 높을수록 수익률효과가 작아지게 된다는 것이다. 불입기간 n 의 경우 $TR_p \geq TR_a$ 이 일반적이므로 n 에 곱해지는 우변값은 항상 1보다 크게 되어 n 이 커질수록 i 값은 작아지게 된다⁷⁾. 이는 불입기간이 길어질수록 불입금 소득공제의 수익률효과가 줄어들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다섯째, 구개인연금의 경우 소득공제혜택이 주어지는 금액은 불입금의 40%이고 연금급부에 대해 비과세 되므로 위 식은 다음과 같이 수정되어야 한다.

$$\sum_{t=1}^n (1+i)^{n-t+1} = \frac{n}{1-1.1(0.4)TR_p}$$

7) 우변의 n 에 곱해지는 값이 1일 때는 i 값이 0이 되어 n 값의 변동에 영향을 받지 않지만 1보다 작아지게 되면 n 값이 커짐에 따라 i 값이 負(-)의 값에서 0으로 근접하게 된다.

이 수식에서 보면 신개인연금에 비해서 TR_p 에 0.4가 곱해지므로 불입금에 대한 소득공제혜택은 그만큼 적게 되지만 연금급부가 비과세되므로 $(1-1.1TR_p)$ 항이 없어져 소득공제혜택은 이 항이 있을 때에 비해 최소한 같거나 커지게 된다.

3. 분석결과 및 시사점

가. 소득공제의 수익률효과 분석

(1) 구개인연금에 대한 분석결과

아래의 <표 3>은 앞에서 제시된 계산식을 기초로 수치분석을 위해 불입기간 10년과 20년, 매년의 불입금 180만원(구개인연금 연간 소득공제 한도), 불입금납입 완료 후 누적불입금의 즉시개시연금을 가정하여 작성하였다. 불입금에 대한 소득세 환급은 불입금납입 다음 연도 1월에 이루어지므로 불입금을 1월에 납입하게 되면 불입금 납입 후 1년 뒤에 환급이 이루어지고 불입금을 12월말에 납입하게 되면 불입금 납입 후 바로 환급이 이루어지는 셈이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두 경우 모두에 대한 수익률을 제시한다.

이 표에서 소득공제절세액은 불입금에 대한 소득공제로 인한 절세액을 의미하며 매년과 합계(10년·20년)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매년의 소득공제절세액은 불입금에 대한 그 해의 절세액으로 구하는 수식은 앞에서 언급한 (소득공제대상 불입금) $\times (40\%) \times (\text{한계세율}) \times (1 + \text{주민세율})$ 이다. 10년과 20년 소득공제절세액은 매년의 소득공제절세액을 단순합계 하여 그 금액이 얼마나 되는가를 알아보기 위한 수치이다. 소득공제절세액은 한계세율이 높아짐에 따라 계속 증가하며 한계세율이 한 단계씩 높아짐에 따라 한계세율이 8%일 때의 절세액의 비례적 배수로 증가한다.

실질불입금은 매년의 불입금에서 매년의 소득공제절세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실질적으로 불입된다고 간주되는 금액이다.

실질불입금에 대한 총불입금 비율은 10년과 20년 불입만기시점에서의 비율로 불입기간에 관계없이 한계세율이 높을수록 커진다.

〈표 3〉 구개인연금 연금개시 시점에서의 소득공제의 수익률효과

(불입금: 매년 1,800,000원)

한계세율	불입기간	소득공제절세액		실질불입금	총불입금 실질불입금	소득공제의 수익률효과(%)
		매년	합계			
8%	10년	63,360	633,600	17,366,400	1.0365	0.6462~0.6505
	20년	63,360	1,267,200	34,732,800	1.0365	0.3389~0.3400
17%	10년	134,640	1,346,400	16,653,600	1.0808	1.3887~1.4087
	20년	134,640	2,692,800	33,307,200	1.0808	0.7291~0.7346
26%	10년	205,920	2,059,200	15,940,800	1.1292	2.1485~2.1973
	20년	205,920	4,118,400	31,881,600	1.1292	1.1297~1.1431
35%	10년	277,200	2,772,000	15,228,000	1.1820	2.9264~3.0190
	20년	277,200	5,544,000	30,456,000	1.1820	1.5412~1.5666

소득공제의 수익률효과는 본 연구에서 파악하고자 하는 것으로 앞에서 제시한 계산수식의 결과라 할 수 있다. 우선 이 값은 한계세율이 올라갈수록 커지지만 불입기간이 10년일 때보다 20년일 때 거의 반으로 줄어든다. 그 이유는 20년 만기 불입금의 경우 소득공제 받은 혜택이 10년 만기 불입금보다 그만큼 더 오래 잠겨있는 셈이 되기 때문이다.

수익률효과 수치를 보면 한계세율에 따라 다르지만 그 값이 생각보다 작은 것을 알 수 있다. 실질불입금에 대한 총불입금 비율에 비하면 상대가 되지 않는다. 한계세율 8% 가입자의 경우 10년 동안의 소득공제 연평균 수익률효과가 0.65%, 20년 연평균 수익률효과가 0.34%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계세율 17%의 경우 그 값이 상대적으로 크지만 20년 불입·만기의 경우 0.73%로 1%도 되지 않는다. 이는 구개인연금의 경우 불입금에 대한 소득공제효과가 극히 미약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세부적인 측면에서 수익률효과 수치가 범위로 제시되었는데 이는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작은 값은 불입금을 1월에 납입하는 경우이고 큰 값은 불입금을 12월말에 납입하는 경우이다. 즉 12월 납입이 1월 납입보다 1년을 더 적게 잠겨있기 때문

에 수익률효과는 조금 더 커지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 차이는 아주 작아 본 연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정도는 되지 못한다.

(2) 신개인연금에 대한 분석결과

아래의 <표 4>는 앞에서 제시된 계산식을 기초로 수치분석을 위해 불입기간 10년과 20년, 매년의 불입금 300만원(신개인연금 연간 소득공제 한도)을 가정하여 작성하였다.

<표 4> 신개인연금 연금개시 시점에서의 소득공제의 수익률효과

(불입금: 매년 3,000,000원)

한계 세율	불입 기간	소득공제절세액		실질불입금	총불입금 실질불입금	소득공제의 수익률효과(%)
		매년	합계			
8%	10년	264,000	2,640,000	27,360,000	1.0965	1.6400~1.6681
	20년	264,000	5,280,000	54,720,000	1.0965	0.8615~0.8692
17%	10년	561,000	5,610,000	24,390,000	1.2300	3.5895~3.7315
	20년	561,000	11,220,000	48,780,000	1.2300	1.8931~1.9322
26%	10년	858,000	8,580,000	21,420,000	1.4006	5.6660~6.0430
	20년	858,000	17,160,000	42,840,000	1.4006	3.0037~3.1078
35%	10년	1,155,000	11,550,000	18,450,000	1.6260	7.8902~8.6784
	20년	1,155,000	23,100,000	36,900,000	1.6260	4.2104~4.4295

이 표의 기본 틀은 <표 3>의 구개인연금과 같다. 다만 소득공제금액과 소득공제 비율이 다르다. 즉, 신개인연금의 경우 소득공제 한도가 연 300만원이고 이 한도내의 불입금액 전부(100%)가 소득공제 된다. 이 차이로 인해 소득공제절세액과 관련 수치가 달라지게 된다.

우선 매년의 소득공제절세액이 불입금 300만원에 대해 수식 (소득공제대상 불입

금)×(한계세율)×(1+주민세율)에 의해 구개인연금에서의 63,360~277,200원에서 264,000~1,155,000원으로 대폭 증가되었다. 10년, 20년 절세액도 그 배수만큼 증가되었고 실질불입금도 그만큼 감소되었다.

실질불입금에 대한 총불입금도 신연금의 경우 불입금 전액이 소득공제 되므로 구연금에서의 1.04~1.18에서 1.10~1.63으로 크게 증가되었다. 이에 따라 소득공제의 연평균 수익률효과도 구연금에서의 0.65~1.57%에서 1.67~4.43%로 증가되었다. 다만 구연금에서와 마찬가지로 소득공제의 수익률효과는 총불입금/실질불입금 비율보다 훨씬 적다. 소득공제의 수익률효과를 보면 불입기간 10년의 경우 1.67~8.68%, 20년의 경우 0.87~4.43%로 대체로 높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신연금의 경우 연금수급시 소득세가 부과되므로 아래의 <표 5>에서의 분석처럼 연금수급시의 한계세율이 얼마나 낮아지느냐에 따라 수익률효과는 달라질 수 있지만 불입금에 대해 당장 돌아오는 소득공제혜택은 크다고 할 수 있다.

<표 5> 신개인연금에 대한 소득공제의 한계세율별 수익률효과

(단위: %)

불입시 한계세율	불입기간	연금수급시 한계세율				
		0%	8%	17%	26%	35%
8%	10년	1.6681	0			
	20년	0.8962	0			
17%	10년	3.7315	2.0788	0		
	20년	1.9322	1.0819	0		
26%	10년	6.0430	4.4052	2.3476	0	
	20년	3.1078	2.2765	1.2207	0	
35%	10년	8.6784	7.0545	5.0171	2.6965	0
	20년	4.4295	3.6173	2.5880	1.4006	0

주: 이 표에서의 수익률은 불입금을 연말에 납입하고 곧바로 다음 연도 1월에 소득공제혜택을 받는 경우만을 기준으로 한다.

〈표 5〉는 〈표 4〉의 연속이라 할 수 있으며 신개인연금의 경우 연금수급시 소득세가 부과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연금수급시 한계세율이 변함에 따라 소득공제의 수익률효과가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보여준다. 우선 10년·20년 불입기간에 관계없이 불입금 불입시와 연금수급시의 한계세율이 동일하게 되면 소득공제의 수익률효과는 전혀 없게 된다.

한편 불입기간 10년의 경우 연금수급시의 한계세율이 불입금 불입시의 한계세율보다 한 단계 낮아지게 되면 1.67~2.70%로 소득공제의 수익률효과가 양호한 편이다. 한계세율이 두 단계 이상 낮아질 수 있는 17%, 26%, 35% 한계세율 해당자의 경우 연금수급시 한계세율이 두 단계 이상 낮아지게 되면 수익률효과가 3.73~8.68%로 그 효과가 상당하다.

불입기간 20년의 경우 연금수급시의 한계세율이 불입시의 한계세율보다 한 단계 낮아지게 되면 소득공제의 수익률효과가 0.90~1.40%로 불입기간 10년일 때보다 훨씬 떨어지게 된다. 한계세율이 두 단계 이상 낮아지는 경우에는 1.93~4.43%로 10년보다는 못하지만 그래도 양호한 편이다.

나. 평가 및 시사점

지금까지의 분석결과를 평가하고 시사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구개인연금의 경우 소득공제의 수익률효과가 한계세율 17% 이하의 소득계층에는 20년 이상의 장기불입이 무의미할 정도로 미미하다. 한계세율 26% 이상의 소득계층에서도 장기불입의 경우 그 효과가 그렇게 좋은 편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구연금 가입자는 고소득계층이 아니면 불입금에 대한 소득공제효과를 중요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 달리 표현하면, 불입금에 대한 투자수익률이 낮을 경우 불입금에 대한 소득공제효과가 그 낮은 투자수익률을 만회해줄 장치가 되지 못하다는 것이다.

둘째, 신개인연금의 경우 불입시의 한계세율, 연금수급시의 한계세율, 가입기간에 따라 소득공제의 수익률효과 차이가 크다. 불입기간 10년의 경우에는 연금수급시의 한계세율이 한 단계만 낮아지면 소득공제의 수익률효과가 양호한 편이지만 불입기간이 20년 이상일 경우 연금수급시의 한계세율이 한 단계 낮아지면 불입시의

한계세율 8% 소득계층의 경우 소득공제효과가 별로이고 그 위 소득계층의 경우에도 그렇게 양호한 편이 아니다. 물론 불입기간 20년의 경우에도 연금수급시의 한계세율이 두 단계 이상 낮아지면 소득공제의 수익률효과는 양호하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하면, 고소득계층일수록 소득공제의 수익률효과가 클 가능성이 높고 중하위소득계층으로 내려갈수록 수익률효과가 양호할 가능성이 떨어진다. 특히 8% 이하의 저소득계층에게는 불입금 소득공제가 개인연금 가입의 유인(incentive)이 되기 어렵다고 하겠다. 물론 이 소득계층에서 자발적으로 개인연금에 가입할 여력이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지는 모르지만 원칙적으로 이들에 대한 소득공제혜택을 무의미하게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셋째, 가입자입장에서 투자수익률이 낮은 경우 수익률이 높은 타금융기관으로 이전하거나 최소한의 불입조건만 충족시키도록 하고 연금수급시까지 추가불입을 하지 않고 대신 그 금액을 수익률이 높은 다른 금융상품에 투입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구연금의 경우에는 5년 이후 해지하면 해지가산세가 추징되지 않고 불입금에 대한 소득공제혜택을 받은 것도 있으므로 투자수익률이 낮으면 해지를 하고 보다 수익률이 높은 금융상품을 대안으로 고려해볼 수도 있을 것이다. 반면에 신연금의 경우 소득공제 받은 혜택을 뺏어내야 하고 5년 이내 해지시 불입금에 대해 2%의 해지가산세가 추가되므로 해지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하고 타금융기관으로의 이전 등 다른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넷째, 불입금에 대해 소득공제를 해주는 현재의 세제지원방식은 저소득층에 대한 노후대비 유인이 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현재의 세제지원방식의 변경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국민연금이나 다른 공적연금의 경우 가입이 강제이지만 개인연금의 경우 가입이 자발적인 것이므로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에 대해 동일한 세제지원방식을 취할 필요는 없다. 다른 나라들도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에 대해 동일한 세제체계를 유지하는 것은 아니다⁸⁾. 따라서 현재의 세제지원체계를 변경하여 특히 노

8) Kenneth Black, Jr. and Harold D. Skipper, Jr., *Life Insurance*, 13th ed.,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2000, pp.542~544 & pp.558~559; Beam, Burton T., Jr. and John J. McFadden, *Employee Benefits*, Homewood Ill.: Richard D. Irwin, Inc., 1985, pp.35~36.

후대비가 미흡한 저소득계층이 많이 가입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재의 소득공제방식은 연금급부시의 한계세율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다르다고 할 수 있지만 불입금에 대해서는 당장 고소득계층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시정도 필요하다. 이러한 점들을 아울러 해결할 수 있는 한 방안으로 불입금에 대해 소득공제 대신 일정 비율의 세액공제를 해주고 연금급부에 대해 비과세 또는 이자소득세만 부과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 예를 들면, 불입금에 대해 20%의 세액공제를 해주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 이 경우 20년 불입시 세액공제로 인한 연평균 수익률효과가 2% 정도 되므로 저소득층에게 개인연금가입의 유인으로서 충분하고 노후소득대비가 양호할 것으로 간주되는 고소득계층에게도 불입금 소득공제혜택이 현재보다는 많이 줄어들지만 가입유인효과가 충분하다.

Ⅳ. 요약 및 결론

1994년 처음 도입되어 선풍적 인기를 끌었던 구개인연금과 2001년 연금 전체에 대한 세제개편과 더불어 새로 도입된 신개인연금에 대해 최근 그 투자수익률이 너무 저조하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개인들의 자발적인 노후소득보장을 유도하기 위해 소득공제혜택을 부여하면서 도입되었지만 최근 저투자수익률이 커다란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낮은 수익률과 연금가입자 개인의 경제적 사정으로 등으로 인해 2001년 말 현재 개인연금에 대한 금융기관 전체 유지율은 33.2%에 불과하다. 현재의 저수익률 상황이 지속되면 신규가입자가 늘지 않을 뿐 아니라 기존 가입자들도 계약의 유지 및 지속적인 불입금 납입에 대해 회의를 하게 될 것이고 개인연금 도입취지가 무의미해질 수도 있다.

개인연금에는 소득공제혜택이 있고 이 혜택으로 인한 절세금액은 소득계층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상당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하지만 연금 불입기간이 상당히 장기이기 때문에 절세금액의 절대적 수치만 볼 것이 아니라 연금불입 전체기간 동안의 수익률효과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비록 개인연금 상품에 대한 투자수익률은 낮

다고 할지라도 개인연금에 주어지는 소득공제혜택이 다른 금융상품에 비해 낮은 수익률을 충분히 만회하게 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면 낮은 투자수익률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다.

개인연금에 주어지는 소득공제혜택의 수익률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수익률 계산을 위한 수식을 제시하고 신·구개인연금에 대한 수익률을 계산하였다. 우선 신·구개인연금 모두 소득공제의 수익률효과는 한계세율이 올라갈수록 커지지만 불입기간이 10년일 때보다 20년일 때 거의 반으로 줄어들었다. 그 이유는 20년 만기 불입금이 10년 만기 불입금보다 그만큼 더 오래 잠겨있기 때문이다. 또한 수익률효과 수치를 보면 한계세율과 불입기간에 따라 다르지만 그 값이 생각보다 작다. 실질불입금에 대한 총불입금 비율에 비하면 상대가 되지 않는다.

연금적립금에 대한 최근의 낮은 투자수익률을 개인연금에 부여하는 소득공제혜택이 어느 정도 만회해줄 수 있는지에 대한 분석결과는 구연금의 경우 고소득계층을 제외한 나머지 소득계층, 신연금의 경우 불입금 불입시와 연금수급시의 한계세율과 불입기간에 따라 다르지만 고소득계층일수록 소득공제의 수익률효과가 양호할 가능성이 높고 중하위소득계층으로 내려갈수록 그 효과가 미흡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8% 이하의 저소득계층에게는 불입금 소득공제가 양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이 결과는 노후소득 보장이 미흡할 것으로 간주되는 소득계층에게는 혜택이 별로이고 노후소득에 별 문제가 없을 소득계층에게 더 큰 혜택이 돌아가도록 되어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연금에 대한 세제지원 목적의 하나로 '국민의 장기저축증대를 통한 투자자금 확충'도 거론되지만 세제지원 본연의 목적은 여유로운 노후소득보다는 공적연금과 퇴직금(퇴직연금)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노후소득을 보완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저소득계층에 보다 많은 혜택이 돌아가거나 소득에 관계없이 동등한 혜택이 돌아가도록 세제지원체계가 확립될 필요가 있다. 이런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한 방안은 불입금의 일정 비율을 일정 한도내에서 세액공제해주는 것이다. 물론 이 경우 다른 연금과 세제지원체계가 달라질 수 있지만 가입이 자발적인 개인연금이 가입이 강제인 공적연금과 굳이 동일한 세제체계를 취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 고광수, 「개인연금제도의 비교와 전략적 선택」, 2000. 11.
- 국세청 Internet site 자료, <http://www.nts.go.kr>.
- 금융감독원 연금감독팀, 「2000년 연금세제 개편 내용 및 시사점」, 『손해보험』, 통권 제 387호, 2001. 2, pp.88~102.
- 『매일경제신문』, 「연금신탁 증도해지면 원금 손실」, 2001. 2. 8.
- 『생명보험협회』, 「개인연금저축 시행을 위한 세부사항」, 통권 제183호, 1994. 4, pp.36~39.
- 전승훈 · 임병인 · 강성호, 「개인연금 가입결정 및 가입상태 변화 분석」, 『보험개발연구』, 제17권, 제1호, 2006. 3, pp.137~167.
- 전영준, 「연금과세 개편안의 평가와 향후 정책과제」,
http://www.nta.go.kr/0/B/index.asp·H_svc_id=4031, 2000. 12. 1.
- 정요섭, 「개인연금저축에 대한 세제지원의 분석과 평가」, 『리스크관리연구』, 제12집, 1999. 12, pp.147~171.
- _____, 「신 · 구개인연금저축에 대한 세제지원 효과 비교」, 『리스크관리연구』, 제12권, 제1호, 2001. 6, pp.157~174.
- 『조선일보』, 「아이고! 내 개인연금 - 예금금리보다 못한 연 1~2% 수익률, 작년엔 마이너스 상품까지」, 2006. 3. 29.
- Beam, Burton T., Jr. and John J. McFadden, *Employee Benefits*, Homewood Ill.: Richard D. Irwin, Inc., 1985.
- Black, Kenneth, Jr. and Harold D. Skipper, Jr., *Life Insurance*, 13th ed.,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2000.

Abstract

The Government introduced the personal pension(PP) to induce a voluntary old-age income protection through the benefit of income tax deduction. Recently the lower rate of return(ROR) on the PP funds has become a big problem. But the problem may not be serious if the ROR effect of the income tax deduction on PPs can sufficiently recoup the lower ROR compared to that of similar financial products.

In order to examine the ROR effect this study computed the average annual rates of return over the period of 10 and 20 years by making the cumulative sum of the 10 and 20 years interest-adjusted after-tax savings equal the simple sum of 10 and 20 years savings. The result shows two things. One is that the ROR effect on both the old and the new PP becomes larger as the marginal tax rate increases and the ROR effect of the 20-year savings period becomes almost half that of the 10-year savings period. The other is that the ROR effect is unexpectedly lower compared to the decreased tax amount on the savings on the PPs. Especially with respect to the old PP the ROR effect is very low except the high income tax bracket and the income tax deduction effect on the savings is ignorable.

With respect to the new PP the ROR effect is more favorable to the higher income tax bracket than the lower income tax bracket. This result indicates that the current tax system on the PPs does not operate as an incentive to provide voluntary old-age income protection for the lower income tax bracket, so the system should be modified to provide all the PP participants with at least the same ROR effect.

※ Key Words: personal pension, retirement income protection, income tax deduction, individual retirement annuity, marginal tax rate